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87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서명옥 · 김기웅 · 이종배
배준영 · 서범수 · 김용태
박성훈 · 조은희 · 김소희
이현승 · 고동진 · 최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에게 친생자가 없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생략)</p> <p>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u>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2. ~ 4. (생략)</p> <p><u><신 설></u></p> <p>③ (생략)</p>	<p>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u>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u></p> <p><u>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u></p> <p>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에게 친생자가 없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u></p>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